#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78

발의연월일: 2022. 6. 28.

발 의 자: 민형배 · 권인숙 · 김남국

김병욱 · 김영배 · 김의겸

김철민 • 박상혁 • 소병훈

송갑석 • 이정문 • 장경태

주철현 · 홍정민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의 형사처벌에 위 헌을 판결했습니다.

현재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면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입니다. 소집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전달하는 일은 행정절차적 협력이므로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선 안 됩니다. 아울러 그 불이행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입니다.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 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벌칙) ① ~ ⑨ (생 략)	제15조(벌칙) ① ~ ⑨ (현행과 가으)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② (생 략)	같음) < 삭 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6조의2제  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 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